

[별표 1]

숙박업시설기준(제2조)

1.호텔영업

구 분

시 설 기 준

가.객실

- (1) 객실은 30실이상 이어야 한다.
- (2) 객실은 양식 또는 한식으로 하고,다음의 구조와 설비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1객실의 바닥면적은 양식의 경우에는 9평방미터이상, 한식의 경우에는 7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.
 - (나) 침구는 객실이 양식인 경우에는 양식 침구
 - (다) 각 실마다 수세식 변기 및 냉·온수도전을 설비한 적당한 면적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라) 객실의 출입구 및 창은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.
 - (마) 옷장 및 옷걸이를 설비하여야 한다.
 - (바) 당해 시설에 상응하는 냉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.
 - (사) 객실이 양식인 경우에는 의자와 탁자를, 한식인 경우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.
 - (아) 객실과 객실 및 객실과 복도는 벽으로 차단하여야 한다.

나. 기타시설

- (1) 적당한 면적의 현관과 로비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(2) 다음의 설비를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조리에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.
 - (나)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.
 - (다) 출입구·창등 개폐구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.
 - (라)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마) 매연·증기 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.
- (3) 다음의 설비를 갖춘 식당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접객에 불편이 없는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.
 - (나)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실과 구획되어야 한다.
 - (다) 적당한 수의 식탁과 의자 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.
 - (라) 창문에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.
- (4) 환기·채광·조명·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(5) 적당한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2.여관영업

구 분

시 설 기 준

가.객실

- (1) 객실은 10실이상이어야 한다.
- (2) 객실의 면적은 6평방미터이상으로 하고, 다음의 구조와 설비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침구류의 보관시설을 하여야 한다.

- (나) 옷장 및 옷걸이를 설비하여야 한다.
- (다) 객실의 출입구 및 창은 적당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(마) 숙박객을 위한 충분한 침구를 갖추어야 한다.
- (바) 접객을 위한 적당한 탁자 및 의자 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.
- (사) 객실과 객실 및 객실과 복도는 벽으로 차단하여야 한다.
- (아) 당해시설에 상응하는 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. 연탄에 의한 난방시설을 할 경우에는 객실내에 연탄 연소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나. 기타시설

- (1) 적당한 면적의 현관과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숙박객을 위한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조리장은 1호텔 영업의 나 (2)의 기준에 의한다.
- (3) 숙박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다음 시설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객실에 욕실 및 변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(가) 남·녀별로 구분된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
 - (나) 각층에 남·녀별로 구분된 수세식변소. 다만,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과 분리된 곳에 남·녀별로 구분하여 변소를 설치하되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망시설을 하여야 한다.
 - (다) 각층에 세면시설
- (4) 환기, 채광, 조명, 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.

3.여인숙

구 분 시 설 기 준

가. 객실

- (1) 객실바닥 면적의 합계가 33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.
- (2)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바닥면적은 3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.
- (3) 2층 침대를 두는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의 간격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(4) 숙박객이 이용할 충분한 침구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(5) 옷장 또는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.

나. 기타시설

- (1) 출입구에는 숙박객의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숙박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다음 시설을 하여야 한다.
 - (가) 욕실 또는 샤워시설(인근에 공중목욕장이 있어 숙박객의 목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)
 - (나) 남·녀별로 구분된 수세식 변소. 다만,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과 분리된 곳

에 남·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되,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망 시설을 하여야 한다.

(다) 세면시설

(3) 숙박객을 위한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리장은 1호텔영업의 나 (2)의 기준에 의한다.